

#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칙

제정 2011. 3. 1

개정 2013.12.1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대학원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대학원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 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공개 요청의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총회, 대표자운영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기숙사자치회, 외국인대학원학생회로 구성된다.

## 제 2 장 대학원학생총회

제6조(지위)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학원학생총회를 둔다.

제7조(구성) 대학원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8조(권한) ① 대학원학생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3. 각 기구의 업무 계획 및 결과 보고 심의
4. 각 기구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결산보고의 심의 및 승인
5. 학사 운영과 학내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
6. 각 자치 단체의 선거와 운영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7. 대학원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권

8. 기타 본회의 존폐에 관한 사항 및 대학원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② 대학원학생총회의 업무 및 권한은 대표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장) ① 대학원학생총회의 의장은 대학원총학생회장이 한다.

② 대학원총학생회장 부재 시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하며 회장단 부재 시에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이 대행한다.

③ 단 제8조 제7호의 경우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이 대행한다.

제10조(소집)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 대학원 총학생회장단은 10일 이내에 대학원학생총회 소집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이 요구,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① 대학원학생총회 의장은 대학원학생총회를 소집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과 함께 대학원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대학원학생총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12조(의결) 대학원학생총회의 형태가 모임일 경우, 회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여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학원학생총회의 형태가 학생 총 투표일 때는 1/5 이상의 투표에 투표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대신 심의, 의결한다.

### 제 3 장 대표자운영위원회

제13조(지위) 대표자운영위원회는 대학원학생총회의 결정권을 위임받은 의결기구로서 다양한 학생 자치단체와 학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내 제반 사항들을 논의한다.

제14조(구성) ① 대표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각 학과의 학과대학원자치회장. 단, 부재 시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을 받은 임시 대표가 대신할 수 있다.

2. 대학원총학생회장단 2인

3. 대학원기숙사자치회 회장 1인

4. 외국인학생회 회장 1인

5. 학과대학원자치회장 이외의 집행부 위원

② 대표자운영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위원회 위원

2. 참석의사를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얻은 자

제15조(대표자 등록) ① 매 학기 시작 후 첫 번째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각 학과의 학과대학원자치회장 또는 임시 대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경우 해당 학기의 대표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② 전항의 대표자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변경 혹은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학원총학생회장이 겸임한다.

② 대학원총학생회장 부재 시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이 대행하며, 회장단 부재 시에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이 대행한다.

③ 회장단 탄핵, 또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써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대표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대학원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2. 대학원학생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18조(소집) ① 대표자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매달 정기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총학생회장 부재 시에는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이 임시 의장으로서 정기회 개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③ 대학원총학생회장단 미선출시에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임시회는 재적 대표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학생회장단 탄핵 시 3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9조(공고) ①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은 대표자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회의 안건과 함께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20조(의결) ① 대표자운영위원회는 재적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장 대학원총학생회장과 대학원부총학생회장

제22조(지위) ①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학원학생총회와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은 대학원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대학원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단이 탄핵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선출을 통해 선출된 1인이 대행한다.

제23조(임기)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① 대학원학생총회 및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학원총학생회장은 대학원학생총회 및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②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대학원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③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④ 기타 대학원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25조(지위보장)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은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본 회칙에 의한 탄핵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 5 장 집 행 부

제26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27조(구성) 집행부는 대학원총학생회장, 대학원부총학생회장, 각부 부장 및 그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28조(기구) 집행부는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부와 특별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내부 시행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①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대학원총학생회장의 지도 내용 등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 각 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심의하고 대표자운영위원회에 보고, 제출한다.

③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협의권을 대행한다.

## 제 6 장 대학원기숙사자치회

제30조(지위 및 구성) 대학원총학생회 회원 중 대학원기숙사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며 이를 대표한다.

제31조(회장단) 자치회장은 대학원기숙사 동대표의 과반수의 동의로 임명되며 회를 대표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대학원기숙사 거주 학생의 의견을 대표하고 복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기숙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외국인학생회

제33조(지위 및 구성) 대학원총학생회 회원 중 한국 국적을 갖지 않는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며 이를 대표한다.

제34조(회장단) 외국인학생회 회장은 외국인학생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외국인학생회를 대표한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학내 외국인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학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 8 장 학과대학원자치회

제36조(지위 및 구성) 대학원총학생회 회원 중 해당학과에 소속된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며 이를 대표한다.

제37조(회장단) 학과대학원자치회장은 해당 학과의 대학원생을 대표하며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원이 된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학과대학원자치회는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하는 학과대학원생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며 기타 상설의결기구를 둘 수 있다.

## 제 9 장 자문위원회

제39조(지위 및 구성) 전년도 대표자운영위원회 위원을 자문위원회 회원으로 하며 이를 대표한다.

제40조(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장단과 집행부의 정책수립에 있어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대표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 10 장 선 거

제41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모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제42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43조(자격) 피선거권자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

한 자이어야 한다.

2. 피선거권자는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자이어야 한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② 대표자운영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대학원총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45조(선거방법과 시기) ① 대학원총학생회장과 대학원부총학생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하거나, 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하고 당선 후 임기 시작 전까지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총학생회장 출마자는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다

③ 회장단 선거 입후보 기간은 9월부터 하며, 선거는 11월에 실시한다.

④ 단,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해 12월 말까지 선거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당선) ① 복수 후보시 당선은 유권자 15% 이상이 투표하였을 경우 최다득표를 한 경우이다.

② 복수 후보시 15%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일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수 후보시 15% 투표에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복수의 동수 최대득표자들만을 포함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④ 단수 후보시 당선은 투표수의 80%가 찬성할 경우 또는 유권자 15% 이상의 투표하여 투표수의 과반이상 찬성할 경우이다.

⑤ 단수 후보시 투표기간동안 4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47조(당선 공고)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1장 재 정

제48조(재원) 본회의 재정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대학원총학생회비와 본교 교비지원금, 각종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9조(대학원총학생회비) ① 대학원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과 함께 납부한다.

② 대학원총학생회비의 조정은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예산안) ① 각 기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운영위원

회에서 확정한다.

②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은 매 학기 첫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③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했을 경우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내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52조(경정예산) ①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안을 가감하여야 할 경우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편성한 경정예산은 집행부의 책임 하에 대표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3조(예산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②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집행한 예산 일체를 자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결산) ① 각 기구는 회계연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대표자운영위원회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부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집행부는 대표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55조(감사) 대표자운영위원회 재적 의원은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각 기구에 비치된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12 장 회 칙 개 정

제56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운영위원회 재적 대표자 1/3이상의 발의

2. 총학생회장의 발의

3.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57조(공고)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후 3일 이내에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결) ①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은 발의된 회칙 개정안을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표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안은 의결권을 가진 전체 위원의 2/3의 찬성으로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③ 회칙의 개정은 대표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9조(공포) 대표자운영위원회 의장은 확정된 회칙 개정안을 확정일 3일 이내에 공포

하여야 한다.

제60조(발효) 회칙 개정안의 발효는 회칙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부칙에 발효 날짜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부 칙

이 회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